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7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홍정민·권칠승·박성준

이성만・오영환・맹성규

전혜숙 · 김승남 · 서영석

김경만 의원(10인)

제안이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관리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 관리·운영·집행이 불투명한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임.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건물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분쟁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관리인에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함(안 제25조의2 신설).
- 나.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의3 신설).
- 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 라. 시·도지사가 점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등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관리인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5 신설).
- 마.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제2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공용부분의"를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로, "위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로, "분담금을"을 "분담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로,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이하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사용료 등의 납부 및 관리비 등의 공개 등)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구분소유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사람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전유부분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을 통하여 해당 건물의 관리단이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

5조의4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25조제2호에 따른 관리비
-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5조의3(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전과 그 밖에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제25조의4(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 본문 중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을 "점유자는"으로 한다.

제26조의5 및 제2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① 시·도지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유부분의 수가 150개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등,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관리단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집합건물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4. 집합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관리단 등이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위원회, 관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등에게 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

- 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①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집합건물의 게시판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등의 열람, 복사 요 구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의6(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집합건물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 2.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감사 및 조치
 -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 ③ 집합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

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업무·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25조, 제26조"를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로, "제26조의4까지"를 "제26조의6까지"로 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소관청이"를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 ①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
- 5. 제26조의5제8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관리비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륨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 1의2. (생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 2.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 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하는 내용의-----분담금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이하 "관리비"라 한다)을----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 하는 자(이하 "구분소유자등" 이라 한다)-----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사용료 등의 납부 및 관리비 등의 공개 등) 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납부 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용료 등을 구분소유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사람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내 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전유부분별 부과내역은 제외한 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해당 건물의 관리단이 운영 ·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집합건 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야 한다.

- <u>1. 제25조제2호에 따른 관리비</u>
-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 급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신 설>

제25조의3(관리비등의 집행을 위

한 사업자 선정) 전유부분이 1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전과 그 밖에 해당 건물 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 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 다.

-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25조의4(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 템 구축·운영·위탁)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u><신</u> 설>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생 략) 🔻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 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 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 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신 설>

	항:	게	UF:	라	국5	Ξī	통.	부경	상관	0]
	<u>인</u> 기	정하	는	자	베게	위	탁형	할	수	<u>있</u>
	<u>다.</u>									
K)	263	조의	2(3	티계	감사	.)	1	(ক্	년 행	과
	같음	음)								
	2	<u>점</u>	유지	}는						
			- <u>.</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① 시·도지사는 집합건 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 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유부분의 수가 150개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등,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단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 사에 필요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집합건물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4. 집합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관리단 등이 집합건물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위원회, 관리인 등의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집합건 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 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 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
 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
 한다.
- ①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집합건물의 게시판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한다.

제26조의6(집합건물 관리비리 신 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 지사는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신 설>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 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집합건물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 2.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감사및 조치
-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 과의 요지 등 통보
- ③ 집합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 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받은 시・도지사는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제28조(규약) ① ~ ③ (생 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 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 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 야 한다.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u>제25조, 제26조의4</u> 6조, 제26조의2부터 <u>제26조의4</u> 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u>10일 이내에 그 결과의 요지를</u>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업무・신고 및 처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규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는</u>
<u>.</u>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32호(현기에 대한 현증)
əil OE 🗷 — əil O
<u>제25조, 제2</u>
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
<u>6조제26조의6</u>
<u>까지</u>

수로 한다.

제66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u>1. · 2.</u> (생 략)

<신 설>

제66조(과태료) ① 제26조의5제1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 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②</u> -----

-----.

- 1.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
-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5. 제25조의5제8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2)	•	(3)	(생	략)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관청</u>이 부과·징수한다.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5</u>		- <u>제4항</u> -		
			<u>:</u>	소관청
또는 시	도지.	<u> </u>		